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심리상담사 관련 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984호)
-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039호)
- 심리사법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53호)
-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456호)

2022.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적 검토	12
1. 심리상담 서비스의 수요 증가	12
2. 심리상담 분야 자격증 현황 및 문제점	15
3. 심리상담 관련 현행 법률 현황	21
4.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22
5. 제정안의 구성체계	28
6. 해외 주요국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제도 현황	31
7. 총괄 검토의견	40
8.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45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64
1. 정의·업무·무자격자의 업무 종사 금지 등	64
2. 심리상담사·심리사·상담사의 자격·응시자격 등	83
3. 등록 등	107
4. 심리상담법인 또는 심리서비스 법인 설립	118
5. 심리상담사·심리사·상담사의 권리·의무	123
6. 협회·징계 등	131
7. 벌칙 등	143
8. 부칙(특례·경과조치 등)	150

※ 참고자료	158
1. 심리상담 관련 국내 법령 현황	158
2. 자격증 관련 등록취소, 등록거부 등에 관한 입법례	160

I. 개 요

1. 심리상담사법안(의안번호 211498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중윤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2. 3. 28.
- (3) 회 부 일 : 2022. 3. 29.

나. 제안이유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심리상담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심리상담사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개인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조).
- 3)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안 제4조).
- 4) 대학원·대학 등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 5) 심리상담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 6)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2조).
- 7) 사무직원, 보수, 비밀유지의무,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심리상담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 8) 심리상담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를 둠(안 제36조).
- 9)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

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안 제42조).

2.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503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2. 3. 31.
- (3) 회 부 일 : 2022. 4. 1.

나. 제안이유

최근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여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들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마음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

상담 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심리상담사는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안 제3조).
- 3)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안 제4조).
- 4) 심리상담사의 자격, 결격사유, 심리상담사시험, 응시자격,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5) 심리상담사의 등록, 사무소 설치, 합동사무소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6) 심리상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무, 업무의 연계, 심리상담사 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7) 국민의 마음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심리상담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를 둠(안 제25조).
- 8)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심리상담사협회는 심리상담사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취득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9)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심리상담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내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안 제31조).

3. 심리사법안(의안번호 211545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정숙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2. 4. 29.

(3) 회 부 일 : 2022. 5. 2.

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우울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사의 업무와 심

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고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행복수준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총칙

(1) 심리서비스 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

심리사가 수행하는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심리서비스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함.

(2) 심리사의 업무 범위 구체화(안 제3조)

심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로 명시함.

2) 심리사 자격 제도의 도입(안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심리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심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전공 이수 학위취득 및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 이수 등을 자격 취득요건으로 정함.

3) 심리사 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9조)

심리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심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수련이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 사유로 정함.

4) 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안 제10조)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5) 수련 심리사 제도의 도입(안 제15조)

심리사는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련심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심리사의 실무수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한국심리사협회의 설립(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를 두고, 심리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서비스 업무 및 심리사의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4. 상담사법안(의안번호 211645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2. 7. 14.

(3) 회 부 일 : 2022. 7. 25.

제안이유

최근 상담 서비스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학문과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상담인력도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상담사 자격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민간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비전문 기관이 난립함으로써 상담을 받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담사의 자격, 업무 및 의무와 상담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상담사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3조).
- 다.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
- 마. 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련을 받도록 함(안 제8조).
- 바. 상담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상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상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사. 상담사의 등록, 상담소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보장의무, 상담기록부등 기록 의무 등 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상담사는 상담에 관한 연구, 상담사의 윤리 확립 및 상담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차. 시군구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상담서

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사가 이 법을 위반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상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는 상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음(안 제28조).

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는 자 및 상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상담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을 개설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II. 총괄적 검토

1. 심리상담 서비스의 수요 증가

□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취업문제, 고령화, 상대적 빈곤, 이혼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국민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¹⁾에 따르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불안장애 혹은 우울장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8%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 중 1/4 이상이 평생 동안 한가지 이상의 정신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함.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진단	전체	남자	여자
알코올 사용장애	11.6%	17.6	5.4
니코틴 사용장애	9.5	17.7	1.1
우울장애	7.7	5.7	9.8
불안장애	9.3	5.4	13.4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27.8	32.7	22.9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22.9	23.3	22.4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14.4	9.0	19.8

1) 만 18세 이상 ~ 만 79세 이하, 총 5,511명을 대상으로 실시

또한, 전체 응답자 중 평생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8%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정신의학과 의사와 상담한 적이 있는 경우는 3.7%, 정신건강전문가(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간호사)와 상담한 적이 있는 경우는 0.3%로 나타남.

-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위험군 비율이 17.5%('20.3) → 18.9%('21.12) → 16.7%('22.3)로²⁾, '21년 12월에 비해 낮아지긴 하였지만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³⁾ 3.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살생각 비율도 9.7%('20.3) → 13.6%('21.12) → 11.5%('22.3)로, '21년 12월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초기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전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었음.⁴⁾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심리상담 건수는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⁵⁾

그런데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정신건강분야 전문인력이 OECD 평균의 1/6 수

2) 2022.3월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

3) 2020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

4)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5) '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의 경우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로 조사되어,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코로나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준에 불과할 정도로 양적으로 부족⁶⁾하고 제한적인 심리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음에 따라, 이용이 용이한 민간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심리상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도⁷⁾되는 등 국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2020년도의 경우 2011년 대비 6.9% 증가에 그쳐 실제적인 수요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고,⁸⁾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경험한 10명 중 9명은 전문가를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를 찾지 않는 이유 중 14.7%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였다고 조사된 바 있음. ⁹⁾

-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일반인들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더라도 적절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6)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 16.2명 vs OECD 평균 97.1명

7) 2019. 7. 19. KBS 추적 60분에서, ‘심리상담소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심리상담소 개설 자격 기준 부재, 심리상담사 범죄행위 처벌 규제 미비, 전자 발찌 착용자의 심리상담소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4),9)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재인용

2. 심리상담 분야 자격증 현황 및 문제점

□ (자격제도 개요)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운영·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국가자격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으며,

민간자격에는¹⁰⁾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에 등록한 자격인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공인자격’이 있음.

<자격의 구분>

구 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근 거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개별법률	「자격기본법」	
개 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유 형	국가자격 중 산업 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자격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에 등록한 자격
시 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직업능력연구원	

10)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와 다양화되는 직업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1.12.30. p7)

□ (심리상담 분야 국가자격) 심리상담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에는 대표적으로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②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있으며,¹¹⁾

‘국가기술자격’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심리평가·심리검사·심리치료상담·심리재활·심리교육 및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심리사’가 있음.

<대표적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현황>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¹²⁾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소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발급 현황	• 1급: 1,827명 • 2급: 1,425명 총 3,252명 (‘21년 12월 말 기준)	• 1급: 3,263명 • 2급: 5,792명 총 9,055명 (‘21년 12월 말 기준)	• 1급: 2,541명 • 2급: 3,070명 총 5,611명 (‘21년 12월 말 기준)	• 1급: 179명 • 2급: 1,824명 • 3급: 1,640명 총 3,433명 (‘21년 12월 말 기준)	• 1급: 886명 • 2급: 12,492명 총 13,378명 (‘21년 12월 말 기준)

11) 이외에도 심리상담 관련 국가전문자격으로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주관), 장애인재활상담사(복지부 주관), 국가기술자격으로 직업상담사(고용노동부 소관) 등이 제시되고 있음.

자격 요건	• (1급) ①심리학 석사 이상+ 3년 이상 수련한 자 ②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수련한 자	• (1급) ①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학 석사 이상+3년 이상 수련한 자 ②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 취득 후+5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 소지자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1급) ①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이상+3년 이상 수련한 자 ②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5년 이상 근무경력자	• (1급) ①상담 분야^(H3)의 박사학위 취득자 ②상담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③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1급) ①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 임상심리 관련 2년 이상 실습수련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한 후 +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①심리학 학사 이상 +1년 이상 수련한 자 ②임상심리사 2급 자격 소지자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한 자	• (2급) ①간호사 면허 가진 자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정신건강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 (2급) ①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한 자	• (2급) ①상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②상담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2급) ①학사 + 임상심리 관련 1년 이상 실습수련 받은 자 ②학사+ 임상심리 관련하여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①상담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③타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④전문대학에서 타분야 전문학사+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⑤고등학교 졸업 후+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수련 요건	• 1급: 인증된 기관에서 매해 1,000시간 이상 3년을 요구 • 2급: 인증된 기관에서 1년차 1,000시간 수련 요구			규정 없음
보수 교육	매년 12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연수교육	규정 없음

- 그런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서비스 대상을 정신질환자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임상심리사와 청소년 상담사는 자격증 취득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하위 급수자의 전문성이 문제되어 전 국민 대상의 심리서비스 인프라 전달체계, 전문인력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¹⁴⁾

□ (심리상담 분야 민간자격)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심리상담분야 공인민간자격은 없음.

국내 공신력 있는 주요 학회로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가 있으며, 학회마다 개별적으로 ‘심리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등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국내 주요 학회 민간 자격증 발급 현황>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 일반심리사 <총 1,818명>	• 전문상담사 1급 1,784명 • 전문상담사 2급 7,016명 <총 8,800명>	• 상담심리사 1급 1,791명 • 상담심리사 2급 5,416명 <총 7,207명>	• 임상심리전문가 <총 1,9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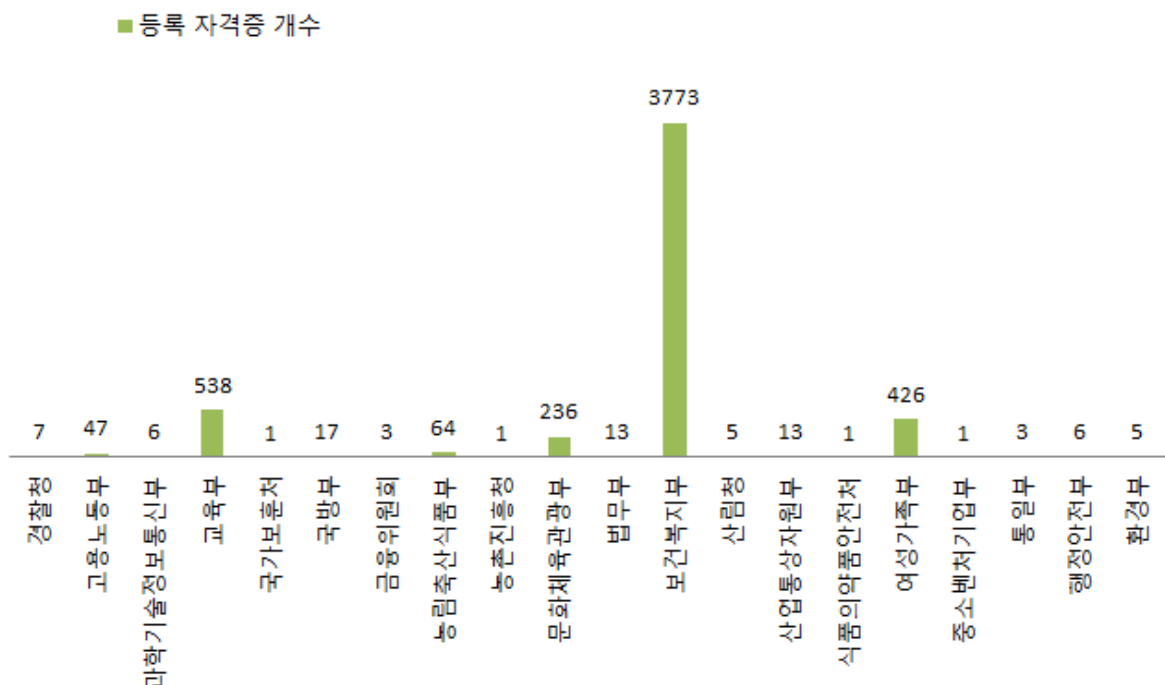
12) 여성가족부 소관

13)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등을 말함.

14)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p56,)

- 이외에도 기타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심리 또는 상담’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은 총 5,166개(대략 20만명 정도 예상됨)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 발급 자격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해당됨.

<주무부처별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현황>¹⁵⁾



-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첫째, 「자격기본법」 제17조16)에 근거하여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

15) 출처: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16)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된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고, 관계 주무부처도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등만 확인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자격증이 과도하게 발급되는 주요 원인이며, 등록된 자격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민간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민간자격 등록 절차>¹⁷⁾

① 민간자격관리자가 주무부장관에 신청→ ② 한국직업능력연구원(등록업무위탁기관) 의 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가능여부 검토 요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금지해당 분야 여부 및 명칭 사용 가능 여부 회신→ ④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둘째,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및 평가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함에 따라, 심리·상담 분야 민간자격 중에는 석·박사 학위와 수천 시간의 상담 경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자격증도 있지만, 백화점 문화센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10시간 남짓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을 수여 받는 경우가 있는 등 취득과정이나 자격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격증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임.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7) 민간자격정보서비스홈페이지(<https://www.pqi.or.kr/int/intRegSysView.do>), 민간자격소개 참조

셋째, 그 밖에 자격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격관리체계의 부재, 심리서비스의 일정한 질을 담보하는 가격의 기준 부재 및 다양한 가격으로 인한 상담수련의 혼란과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음.¹⁸⁾

3. 심리상담 관련 현행 법률 현황

□ 현재, 심리상담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 법령에서 ‘상담’ · ‘심리상담’ · ‘심리치료’ 또는 ‘상담치료’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심리상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3개의 법령, ‘심리치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20개의 법령, ‘상담치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령에서 각 분야에 따라 개별적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음.¹⁹⁾

<참고1 심리상담 관련 국내 법령 현황>.

- ‘상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 현황을 조사한 자료²⁰⁾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 ‘상담’이 언급된 법률은 총 462개이며, 이 중 약 30% 법률(133개)만이 ‘심리상담’을 지칭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을 지칭하는 법률도 ‘상담’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이라는 표기만으로는 심리상담을 제공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18) 「국내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인규, 장숙희, 2019, p45

1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상담치료’ 용어로 검색한 것임.

20) 「법률 분석을 통한 상담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현황과 과제」, 2018, 최정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등 주요 법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 ‘심리상담’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도출한 것임.

있는 상담인지 ‘업무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특정 자격 소지자가 아닌 ‘관련 시설 실무경력자, 학위소지자, 기타’라는 모호한 표현 방식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 명확한 자격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이하 “최종윤의원안”이라 함)·「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이하 “전봉민의원안”이라 함)·「심리사법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이하 “서정숙의원안”이라 함) 및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이하 “심상정의원안”이라 함)은, 모두 동일하게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여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 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음.
- 다만, 최종윤·전봉민·심상정 의원안은 심리상담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에 비해,

서정숙의원안은 핵심역량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정신건강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제도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함.

□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제명	심리상담사법안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리사법안	상담사법안
목적	심리상담사의 자격·업무 등 규정 ⇒ 국민의 마음건강증진과 행복추구		심리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상담사의 자격·업무 등 규정 ⇒ 국민의 마음건강증진
정의	“심리상담”이란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전략과 대면·비대면 대화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심리상담”이란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	“심리상담·심리치료”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 ※“심리서비스” 항목에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교육, 심리치료, 심리연구 및 개발 등 포함	“상담”이란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전략 등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자격증 명칭	심리상담사		심리사	상담사

구분	최종윤의원 안	전봉민의원 안	서정숙의원 안	심상정의원 안
업무	•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심리자문 • 그 밖에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마음의 건강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	•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 심리상담·심리치료·심리재활 • 심리교육, 심리자문 • 심리연구 및 개발 •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자문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 그 밖에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독점적 지위 명시	심리상담자가 아닌 자의 심리상담 업무 금지 명시(예외,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좌 동>	심리사가 아닌 자의 심리사 업무 금지 명시(예외,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록한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 할 수 없음(예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자격심의위원회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과목, 선발 인원 결정, 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	규정 없음	심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	<u>상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설치</u>

구분	최종윤의원 안	전봉민의원 안	서정숙의원 안	심상정의원 안
자격	심리상담사 시험(매년 1회,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상담사 자격> • 1급 <u>국가시험에 합격</u>하고 + <u>5천 시간 이상 수련</u>을 받은 자 •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급 상담사 자격>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및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 이수 후 졸업한 후 <u>2천 시간 이상 수련</u>을 받은 자 •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험 응시 자격	• 대학원·대학 등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u>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u>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u>3년 이상 심리상담사 업무</u> 혹은 그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에 열거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u>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u>을 마친 자,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u>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u>을 마친 자 •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	<1급 상담사 국가시험> •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자 •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험 위탁	시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시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구분	최종윤의원 안	전봉민의원 안	서정숙의원 안	심상정의원 안
등록	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등록 해야 함 ⇒(등록요건) “ 실무교육 ”받아야 함		•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심리사 업무를 하려면 등록 해야 함 ⇒(등록요건) “ 실무수련 ” • 등록갱신기간 3년	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등록 해야함.
등록 취소 또는 거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받은 때 • 결격사유 해당 • 등록취소 신청 시 • 폐업신고 시 • 사망시		• 결격사유 해당 • 실무수련 받지 않은 경우 • 보수교육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기간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거부> • 수련받지 않은 경우 • 결격사유 해당 <등록취소> • 결격사유 해당 • 등록취소 신청시 • 사망시
명의 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가능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대여 금지 등
사무소 ·합동 사무소 설치	• 심리상담사는 사무소 1개만 설치 • 개업심리상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 설립 가능			• 상담소 개설 요건 ⇒ ‘등록’ • 상담소 개설등록 취소 요건 규정
법인 설치	심리상담법인 설립		심리서비스 법인 설립	규정 없음
경업 금지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심리상담사는 다른 심리상담법인 또는 소속심리상담사가 되어서는 안됨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보수	심리상담사는 내담자로부터 심리상담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 심리상담사와 사무직원은 보수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됨.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의무	직무상의 비밀누설 금지		• 직무상의비밀누설 금지 •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 보안조치 의무	•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 비밀보장의무
교육	• 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을 받아야 함	• 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을 받아야 함	<u>의료기관, 공공기관, 센터, 기업, 학교 등에서 심리사 업무에 종사하는 심리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u>	상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 받아야 함
협회	심리상담사 협회설립협회 가입 재량		한국심리사 협회 설립 심리사 협회 강제가입	한국상담사협회

구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징계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 설치		협회가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함	상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설치 -시험과목, 시험선발인원 결정, 징계
특 례 · 경 과 조 치 등	•이 법 시행 후 아래의 사람이 1년 이내에 심리상담사 자격증 발급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 발급 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다른 법령에 따른 심리 또는 상담 관련 자격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간단체가 발급한 심리 또는 상담 관련 자격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 법 시행 당시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2년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 가능	이 법 시행 후 아래의 사람이 3년 이내에 심리상담사 자격증 발급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 발급 ① 심리학·교육학·청소년학·아동학·상담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간을 충족한 자 ②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심리학·교육학·청소년학·아동학·상담학·사회복지학·정신의학·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전공을 5년 이상 교수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간을 충족한 자 ③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 심리상담 분야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	•이 법 시행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에 한정하여 심리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받은 자 ② 심리사 관련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 심리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실무수련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상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음. -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을 개설하여 제공 가능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상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음. -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을 개설하여 제공 가능

5. 제정안의 구성체계

□ 최종윤의원안은 9개의 장과 49개의 조문과 부칙, 전봉민의원안은 7개의 장과 34개의 조문과 부칙, 서정숙의원안은 5개의 장과 26조의 조문과 부칙, 심상정의원안은 8개의 장과 33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

* 장은 조문이 많은 최종윤의원안 기준으로 함

장 구성	조문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제2조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제3조	업무	업무	심리사의 업무	직무
	제4조	무자격자의 심리상담 업무 금지	무자격자의 심리상담 업무 금지	무자격자의 심리사 업무 금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사 자격	자격
제2장 자격 과 시험	제6조	심리상담사의 자격	결격사유	심리사의 전문영역	국가시험
	제7조	결격사유	심리상담사시험	결격사유	응시자격
	제8조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	응시자격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	수련
	제9조	심리상담사시험	심리상담사시험의 위탁		결격사유
	제10조	응시자격	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상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제11조	심리상담사시험 의 위탁			상담사 자격증 교부
	제1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3조	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3장 등록등	제14조	등록	등록(제11조)	등록 및 갱신등록(제9조)	등록(제12조)
	제15조	등록의 취소	등록의 취소(제12조)	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 등(제10조)	등록거부(제13조)

장 구성	조 문	최종윤의원 안	전봉민의원 안	서정숙의원 안	심상정의원 안
	제16조	등록료	사무소 설치 등 (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제11조)	등록취소(제14조)
	제1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합동사무소 (제14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12조)	상담소의 개설(제15조)
	제18조	폐업신고	심리상담법인 (제15조)	보안조치 의무(제13조)	상담소의 개설취소 등(제16조)
	제19조	휴업신고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16조)	보수교육(제1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17조)
	제20조	사무소 설치 등	폐업신고(제17조)	수련심리사(제15조)	
	제21조	합동사무소	휴업신고(제18조)	사무직원(제16조)	
제4장 심리 상담 법인	제22조	심리상담법인		자격취소 등(제17조)	
	제23조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등			
	제24조	심리상담법인의 설립 절차 등			
	제25조	심리상담법인의 해산			
	제26조	심리상담법인의 인가 취소 등			
	제27조	심리상담법인의 사무소			
	제28조	경업의 금지			
	제29조	준용규정			
심리 상담 사의 관리 의무	제30조	제5장	제4장		제4장
		사무직원	사무직원(제19조)		품위유지 및성실의무(제18조)
	제31조	보수	보수(제20조)		비밀보장의무(제19조)
	제3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제21조)		상담기록부등(제20조)
	제33조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업무의 연계(제22조)		기록 열람 등(제21조)
	제34조	상담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	상담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제23조)		명의대여 금지(제22조)
심리 상담사 협회	제35조	심리상담사의 교육	심리상담사의 교육·연수(제24조)		보수교육(제23조)
		제6장	제5장	제4장(한국심리사 협회)	제5장(한국상담사협회)
	제36조	심리상담사협회의 설립 등	심리상담사협회의 설립 등(제25조)	한국심리사협회 (제18조)	한국상담사협회 (제24조)
	제37조	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제26조)	협회의 정관(제19조)	윤리규정(제25조)
	제38조	윤리규정	협회의 가입의무(제27조)	협회의 가입의무(제20조)	상담서비스센터 (제27조)

장 구성	조 문	최종윤의원 안	전봉민의원 안	서정숙의원 안	심상정의원 안
	제39조	협회에 대한 감독	직업윤리규정(제28조)	직업윤리규정(제21조)	
	제40조	정보 공개	정보공개제(29조)	징계(제22조)	
		-	제6장 지도·감독	권한의 위탁(제23조)	
		-	자격정지처분(제30조)		
		-	심리상담사의 자격취소(제31조)		
징계		제7장	-		제6장(징계)
	제41조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	-		징계처분(제28조)
	제42조	징계	-		
보칙		제8장			제7장(보칙)
	제43조	보고와 검사			상담행위의 제한(제29조)
	제44조	청문			보고와 검사(제30조)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권한의 위임·위탁(제31조)
	제4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벌칙		제9장	제7장	제5장	제8장
	제47조	벌칙	벌칙(제32조)	벌칙(제24조)	벌칙(제32조)
	제48조	양벌규정	양벌규정(제33조)	벌칙(제25조)	과태료(제33조)
	제49조	과태료	과태료(제34조)	과태료(제26조)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1년)	시행일 (공포 후 1년)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시행일 (공포 후 1년)
	제2조	청소년상담사 등의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심리상담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심리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상담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민간단체가 발급 한 자격증 소지 자의 심리상담사 자격 증 취득에 관한 특례	심리상담사 자격 의 부여에 관한 특례		상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심리상담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명칭의 사용제한 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6. 해외 주요국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제도 현황

- 국가별 제도 유형을 보면²¹⁾, ① 심리사와 상담사를 각각 따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미국, 캐나다), ② 심리사 또는 심리치료사(심리상담사)라는 하나의 직역으로 법제화 되어 있는 국가(호주, 일본, 핀란드) ③ 하나의 법률에서 내담자 유형(증상수준, 대상²²⁾)에 따라 자격형태를 구분하는 국가(독일, 대만)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미국) 주별로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에서 심리사(Psychologist)와 상담사(Mental health counselor, Professional counselor,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등)가 구분된 직역으로 법제화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 LP)의 경우에는 미국 심리학회(APA)²³⁾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 프로그램(임상·상담·학교 심리 분야에 한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상담사의 경우(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LPC)에는 상담 및 관련 교육인증위원회(CACREP²⁴⁾)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졸업 후 일정시간의 수련경험과 슈퍼비전을 받고,

21) 출처: 「해외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제도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2022.6.30.

22) 경증 vs 중증, 아동 vs 성인

2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미국심리학회, APA)

24)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함.²⁵⁾

또한, 활동영역에 있어서 미국의 전문상담사는 학교·재활·직장·대학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적 상담 업무에 집중하는데 비해, 심리사는 심리적으로 좀 더 취약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에 가까운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뉴욕주		미네소타주	
	심리사	상담사	심리사	상담사
자격 시험 응시 조건	• 뉴욕주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심리학 박사학위 + 최소 1년 이상(1,750 시간) 수련	• NCE²⁶⁾ 합격 후, NCMHC E²⁷⁾에 합격해야 함. - NCE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CACREP가 인증한 프로그램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혹은 기타 대학원 수준 상담교육기관에서 48학점 이상의 이론수업과 6학점 이상의 상담실습(supervised field experience in counseling)을 이수해야 하며, 최소 2년의 기간 동안 100시간의 수퍼비전이 요구됨 -NCE 합격 이후, NCMHCE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0학점 이상의 대학원 학점, 9학기 이상(4학기제인 경우 15학기 이상)의 수련이 요구됨	• 미국심리학회(APA)나 캐나다심리학회(CPA)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박사학위 취득 • 국가시험인 EPPP²⁸⁾와 PRE²⁹⁾를 모두 통과해야 함	• NCE에 합격해야함 - NCE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CACREP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혹은 기타 대학원 수준 상담교육기관에서 48학점 이상의 이론수업과정과 6학점 이상의 상담실습(supervised field experience in counseling)을 이수해야 하며, 최소 2년의 기간 동안 100시간의 수퍼비전이 요구됨
수련 조건	• 총 2년의 전일제 수련 시간(1,750 시간/1년) 혹은 시간제로 이루어진 이와 동등한 시간. 적어도 1년 이상은 학위	• 학위과정 중 최소 1년, 600시간의 수련 + 석사학위 수료 이후 3,000시간의 수련	• 1,800 시간 이상의 학위 중 수련시간 (12~30개월 내), 수퍼바이저의 감독하에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의 수련 및 주당 2시간 이상의	• 대학원 학위과정 동안 최소 700시간의 수련 • 학위과정 졸업 후 최소 1~3년간 2,000시간의 수련(자격취득 이후 실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2000시간의 수련에 대한 계획을 제출

25) 「심리상담서비스 국가 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p41, 신윤정·이지연

	과정 수료 이후에 실시 되어야 함		수퍼비전 • 박사학위 취득 후 최소 1년 1,800시간 이상의 전일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시간제 수련,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의 수련 및 1시간 이상의 수퍼비전	
보수 훈련 교육	• 매 3년의 면허 갱신기간 동안 최소 36시간의 교육이수 필요 • 최소 3시간 이상의 전문직 윤리교육 포함(전문가 윤리, 뉴욕 주 법령 등)	• 매 3년의 면허 갱신기간 동안 최소 36시간의 교육 이수 필요	• 2년의 자격 갱신기간 동안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필요	• 자격 취득 후 최초 4년간은 12 학점시간 (semester credit hour, CACREP 혹은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인증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과 40시간의 보수훈련교육을 이수해야함) • 최초 4년의 기간 이후에는 매 2년의 갱신기간마다 40시간의 보수훈련교육 이수 필요

□ (캐나다) 미국과 같이 주별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으며, 심리사(Psychologist)와 상담사(Counsellor, Psychotherapist) 직역이 구분되어 법제화된 주(온타리오주)와 심리사만이 법제화된 주(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혼재되어있음.

26) National Counselor Exam

27) National 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or Examination

28)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

29) Minnesot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

구 분	온타리오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심리사	상담사	심리사	상담사
자격 시험 응시 요건	• 미국심리학회 (APA)나 캐나다심리학회 (CPA)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박사학위 취득 • 미국과 캐나다에서 함께 시행하는 EPPP³⁰⁾와 온타리오주에서 실시하는 윤리 및 법규 관련 필기시험 (JEE),³¹⁾ 서비스 준비도를 평가하는 구술시험에 모두 통과해야 함	• 온타리오주 심리치료사협회에서 인준한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 최소 450시간의 direct service hour와 100시간의 슈퍼비전 충족 • 국가 단위로 운영하는 Canadian Professional Standard fo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필기 시험 응시	• 미국심리학회 (APA)나 캐나다심리학회 (CPA)의 인증을 받은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박사학위 취득 • 미국과 캐나다에서 함께 시행하는 EPPP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실시하는 윤리 및 법규 관련 필기시험 (WJE)³²⁾, 서비스 준비도를 평가하는 구술시험에 모두 통과해야 함	
수련 요건	• 학위과정 중 최소 600시간의 실습(practicum), 이 중 최소 300시간은 direct service hour여야 하며 최소 15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 필요 • 학위과정 중 최소 1,500시간(1년 이상)의 인턴십 • 박사과정 졸업 후 최소 1,500시간(1년 이상)의 수련, 최소 주당 15시간 이상 현장 근무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450시간의 수련과 100시간의 슈퍼비전과 별개로, 자격 취득 후에도 최소 1,000시간의 수련과 150시간의 슈퍼비전을 충족해야 독립적인 Psychotherapist(Counselor)로 활동할 수 있음	• 최소 600시간의 학위과정 중 실습(practicum), 이 중 300시간 이상은 direct service hour여야 하며, 최소 75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이 포함되어야 함 • 최소 1,600시간의 인턴십 (학위과정 중 또는 후, 전일제 근무시 1년, 반일제 근무시 2년).	

			최소 30% 이상의 시간은 direct service hour이어야 하며 4시간의 direct service hour 당 1시간의 슈퍼비전이 이루어져야 함	
보수 훈련 교육	• 매년 자격갱신을 하며, 2년 기간 동안 2개 영역³³⁾에서 최소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온 타 리 오 주 Psychotherapist(Counselor)는 매년 자격갱신을 하지만, 보수교육 내역은 2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년의 기간 동안 최소 40시간의 보수교육 내역을 증빙해야 함	• 매년 자격갱신을 위해 총 7가지 영역별 최소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함	

□ (호주)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주별 법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건강 관련 16개 직역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법령을 제정하여 통일된 기준에 의해 전문인력이 규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6개 직역 내에는 심리사(Psychologist)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심리상담 관련 인력은 법률로써 규제되지 않고, 직역별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각 직역 위원회에서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일본) 2017년 9월 공인심리사법(公認心理師法)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단위로 심리사만 법제화되어 있음.³⁴⁾

30)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

31) Jurisprudence and Ethics Examination,

32) Written Jurisprudence Examination,

33) Professional activities, Continuing education activities

34) 하나의 국가자격증으로 통일하고 있지만, 업무형태에 따라 임상심리사·학교상담사 등의 직업명으로 활동함.

- (자격시험 응시요건) ① 학부 및 대학원에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및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학부에서 문부과학성령·후생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및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심리평가, 심리상담 등 업무에 종사한 자 이며,
- (수련요건) 학부과정에서 최소 80시간의 심리실습(心理實習), 대학원 과정에서 최소 450시간 이상의 심리실천실습(心理實踐實習)³⁵⁾을 한 자임.

□ (핀란드)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 Psykoterapeutin)라는 직역으로 법제화 되어 있음.

- (자격시험 응시요건) 역량-기반 시험(competence-based test)을 통해 심리치료사로서의 역량을 입증함
- (수련요건) ①최소 60학점 이상의 이론적 학습 모듈, 직무 감독하에 수행된 환자와의 심리치료 작업, 개인 심리치료(personal psychotherapy), 최종 프로젝트(final project) 요구 ② 정신건강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업무 경험이 요구되고, 심리치료사 교육(psychotherapist training) 이수를 위해서는 고등 대학 학위를 취득하거나 응용 과학 대학에서 사회 및 건강 분

35)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수련요건(수퍼비전 시간 등)은 존재하지 않음

야(social and health studies)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studies in psychology or psychiatry)에서 총 30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교육(training)에 포함되어야 함.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졸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중등 이후(post-secondary) 간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추가하여 정신의학 전문화 과정(specialisation in psychiatry)을 이수해야 함

□ (독일)은 미국과 달리 주별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1998년 「심리학적 심리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 직업법³⁶⁾」이 제정되어, 성인 내담자를 담당하는 ‘심리학적 심리치료사’와 아동·청소년 내담자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사’가 구분된 직역으로 법제화 되어 있음.

- (자격시험 응시요건) 학사 과정(3년)과 석사 과정(2년)을 통해 심리치료사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사 시험인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심리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2019년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심리학 학위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심리치료사가 될 수 있음.
- (수련요건) 심리학적 심리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의 수련과정(training courses)은 전일제(full-time)로 최소 3년, 시간제(part-time)로 최소 5년간 지속되며, 이론 및 실습 교육(theo

36) (Gesetz über die Berufe des Psychologischen Psychotherapeuten und des Kinder- und Jugendlichen psychotherapeuten)

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만)은 2001년 제정 「심리사법」(心理師法)이 유일한 법률로 심리사 자격만이 입법화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으로는 「심리사법」 안에 임상심리사(臨床心理師)와 상담심리사(諮商心理師)의 두 자격이 분리되어 규율되고 있음.

- (자격시험 응시요건) 법적으로 인정된 대학원에서 임상심리 혹은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인턴십을 마쳐야 함.
- (수련요건) 자격 취득 후 주무청(中央主管機關指定之機)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실무 수련교육(臨床實務訓練)을 받아야 하며, 수퍼비전 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보수훈련 교육) 심리사는 6년마다 자격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이 경우 보수교육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각 영역별로 이수해야 하는 기준이 갱신 기간 동안 총 120점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함(예: 학술심포지엄 참여 1시간당 2점, 대학(원) 수업 이수 1학점당 5점 등)

□ (영국)³⁷⁾ 심리상담사 자격부여를 위한 국가고시와 같은 시험은 없으며, 자격을 갖춘 후 수련을 마치면 자격증이 부여됨.

- (응시 요건) 영국 심리학협회(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심리학협회의 공인회원

37) 출처: 국회도서관 해외법률정보 회답자료(2022.6월)

(Graduate Basis for Chartered Membership)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영국 심리학회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대학의 심리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post-graduate)를 취득하거나, 영국 심리학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체 학점(conversion course)을 취득한 후 영국 심리학협회의 공인회원(Graduate Basis for Chartered Membership)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또한, 공인회원(Graduate Basis for Chartered Membership)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본인이 선택한 분야³⁸⁾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 (수련 요건) 응시요건을 갖춘 자들은 수련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영국 심리학협회는 심리의 각 분야별로 각기 다른 수련을 제공하고 있음.

□ (유럽) 유럽은 국가마다 요건이 다소 상이하나, EuroPsy 기준을 중심으로 공통 요건이 수렴되고 있음. EuroPsy는 자격 취득 위한 최소 교육요건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심리학 학사과정 및 2년 이상의 석사과정을 마칠 것을 요구하고, 최소 1년 이상(1,500시간)의 전문가의 지도 하에 수련을 받도록 하되 특히 심리상담을 제공하려면 최소 2년 이상(3,000시간)의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³⁹⁾

38)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임상 및 건강심리, 상담심리, 교육심리, 법정심리, 직업심리, 신경심리, 스포츠 및 운동심리 분야임.

39)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p67-68) 요약

7. 총괄 검토의견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의 증가, 특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나 국민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우울증 초기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이용이 어렵고, 공급측면에서도 부족한 한계가 있는 반면,

민간 분야의 경우에는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어 현재 다양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고, 상담소도 별다른 제한 없이 신고제로 운영되어 난립하고 있으며, 무자격 또는 비전문적 상담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의 자격과 기준, 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증진과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함.

□ 다만,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상담관련 모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전문적·비윤리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학 비전공자

를 포함하는 일반 심리상담 국가자격으로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 하려는 것이고,

서정숙의원안은 현존하는 국가자격의 비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학 전공 중심의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심상정의원안은 최종윤·전봉민의원안과 유사하나, ‘심리 검사·분석·평가’는 심리학 지식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이 가능한 전문분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포괄하여 전문적인 ‘상담사’ 자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제정안들의 제도화 방안에 따라 심리상담·상담 또는 심리서비스의 정의,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전문성의 기준 및 자격요건, 심리(상담)사의 업무영역 등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고, 전문가·학회·이해관계자 및 직역단체 간에도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의 심리서비스 수요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심리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현행 개별법령에서도 ‘심리상담’을 지칭하는 법률도 ‘상담’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이라는 표기만으로는 심리상담을 제공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담인지 ‘업무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법 제정에 앞서 심리서비스 또는 심리상담 영역에서 국민

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 공적 영역과 민간 분야의 심리서비스 공급체계 및 현황, 현행 개별 법령에서의 심리상담 업무 영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상담학 과목의 교육 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직역별·전문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심상정의원안의 경우 자격기본법령⁴⁰⁾에 따라 민간자격 ‘상담 분야’는 주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소관 부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주요 학회·협회 등 의견 요약>

	의견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서정숙의원안>: 찬성 •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직종은 정신과의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4종이며, WHO 회원국들과 OECD 회원국에서 심리서비스를 주업무로 담당하는 직역은 심리사임. 현재 우리나라는 4개의 정신건강 전문인력 중 ‘심리’의 경우에만 심리사 제도화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현행 국가자격자들을 중심으로 심리상담의 시행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OECD수준의 심리사를 도입할 필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찬성 •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이미 ‘심리상담’ 직무가

40)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주무부장관(제2조제5항 관련)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고, 수준 높은 ‘심리상담사’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음. •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심리사’라는 직군을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는 국가적 자격관리체계와 부합하고, 현실을 반영한 ‘심리상담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합함. <심상정의원안>: 전반적으로 찬성 • 다만, 국민의 마음건강에 대한 비의료 전문 서비스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상담’보다는 ‘심리상담’이 적절함. 또한,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은 심리상담사 중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 있음.
대한의사협회	<최종윤·전봉민·서정숙·심상정의원안>: 반대 •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상담학 과목이 개설된 곳이 많고, 그 기관별 교육 수준도 다양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이 부재함. •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의학과와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현행 보건의료관계 법령과도 상충됨. • 심리(상담)사라는 신규 직종을 창출할 경우 심리(상담)사와 의사 간에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행위인 심리치료를 불법으로 시행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한국상담심리학회	<최종윤 의원안> • 자격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과목 이수·졸업을 기본 자격기준으로 설정할 필요

	<전봉민 의원안> • 심리상담사의 자격은 시험 뿐만 아니라 수련과정이 중요하므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자격시험응시 조건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면 자칫 자격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전문역량을 훈련할 수 있는 교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을 갖춘 수련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 <서정숙 의원안> • 응시자격의 학력 기준을 ‘학사 및 석사’ 또는 ‘석사 및 박사’로 제한하는 경우, 심리학 학사가 아니면 박사학위가 필수가 되어 심리사로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현재 민간에서 인정하는 상담관련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관련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수련과정으로 심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심리사의 자격 급수를 두도록 함. <심상정 의원안> • ‘상담사’의 전문성 수준이 매우 낮고, 무자격자의 상담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담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최종윤·전봉민·심상정 의원안> •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어 전문성 저하문제를 악화시킬수 있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국내 심리상담분야 민간 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분석과 구체적 타당성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함.

8.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의견

-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서비스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
 - 다만, 법안의 핵심인 심리(상담)서비스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유관 학회·단체 간 갈등이 상당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로서의 심리서비스의 역할도 불분명하여 소관부처 조차 불확실
 - 따라서 서비스의 정의, 유형, 제공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갈등요인인 자격제도에 대한 논의 가능
- 현재 중립적 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음.

나. 여성가족부 의견

-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경우, 청소년상담사·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 업무의 영역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청소년 상담사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와 더불어 10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통해 엄격한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므로, 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의 전부면제가 필요함

다. 교육부 의견

□ (전봉민의원안) 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심리 또는 상담과 관련한 민간자격이 기발급되고 있으므로,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관리자의 신뢰보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리상담사와 ‘동일’ 명칭 사용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 적절함.

□ (심상정의원안) 전문대학에서 개설·운영하는 상담 관련 학과의 인력양성 규모가 매년 약 1,300명인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상담사와 같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도 상담사의 자격을 갖도록 상담사 자격 급수 기준을 완화 또는 세분화 필요

※ 청소년상담사는 등급을 1급·2급·3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급 상담사의 경우 ① 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전문대학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상담관련 비전문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소 개설에

대한 “등록 및 신고제” 보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정기관을 통해 상담소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일정 기준 조건을 갖춘 상담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인가제” 검토 필요

라. 경기도 정신건강과 의견

- (최종윤·전봉민·서정숙의원안) 국내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에 앞서, 심리상담 분야 민간 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분석과 더불어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이미 심리상담사 업무(심리검사 및 평가, 상담자문 등)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 자격이 아닌 국가자격을 소지한 직역군(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존재하여 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됨. 이에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인프라 확충 및 인력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련 단체 및 협회 의견

1) 한국심리학회

□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제정안의 “심리상담사”는 심리와는 전혀 무관한 경우에도 해당 자격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직종은 정신과의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4종이며, 전세계 WHO 회원국들과 OECD 회원국에서 심리서비스를 주업무로 담당하는 직역은 심리사임. 현재 우리나라는 4개의 정신건강 전문인력 중 ‘심리’의 경우에만 심리사 제도화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 현행 법령에서 ‘심리’ 관련 업무는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과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2급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자격자의 주요업무는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비롯한 제반 심리업무이므로, 동 제정안은 기존의 국가자격종의 업무를 훼손하는 결함을 갖고 있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760명(1급 1,428명·2급 1,332명, 2018년 기준), 청소년상담사 30,313명(1급 969명·2급 10,940명·3급 18,404명, 2021년 기준), 임상심리사 10,455명(1급 577명·2급 9,878명), 전문상담교사 4,433명(초등 1,295명·중등 1,379명·고등 1,759명)이 있으며, 발의된 수준보다 양질의 심리상담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자가 무려

47,961명에 달함.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30,313명이나 배출되어 있지만 대부분 2급 또는 3급 인력으로 현재 발의된 심리상담사라는 자격기준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자격기준을 가짐에도 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음. 그 만큼 심리상담의 업무는 최소한 OECD 국가 수준으로 엄격한 자격관리를 한 인력들을 중심으로 활용됨.

- 지금도 기존 국가자격자들을 중심으로 심리상담의 시행을 규제하면 새로운 입법 필요성이 없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도적으로 OECD 수준의 심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올바른 정책이라 판단함.

□ (서정숙의원안) 제정안의 제안이유에 심리학에 근거한 전문인력을 규정하는 법안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의 경우 별도의 석사학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므로 통합과정의 최종 학위인 박사학위 인정도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심상정의원안) 제정안은 표방하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에서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종사할 만한 상담사의 교육 및 수련 인증체계가 부재되어 기존 미달의 자격자들을 국가가 양성하고 마음 건강 자격에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음. 법안의 목적은 현재

존재하는 마음건강관련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의 국가자격자들로 충족됨.

2) 한국임상심리학회

□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응시자격에서 OECD 국가 자격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낮은 기준으로, 충분히 수련받지 못한 상담 인력을 양산하고 국가자격증을 부여하여 오히려 국민정신건강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큼.

- 또한, 부칙 제3조(심리상담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특례)에서 명확한 자격 기준이 없이 현재 무분별하게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민간자격증 소지자에게 국가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대국민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법안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심히 우려됨.

□ (서정숙의원안) 동 제정안은 OECD 국가의 자격기준에 부합한 ‘심리사’ 자격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동의함.

- 다만, 최근 석박사통합과정이 확산되고 석박사통합과정 중간에 석사학위 취득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의 교육과정에 맞게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수정 필요

□ (심상정의원안) 동 제정안의 ‘상담’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현존하는 상담 자격증(청소년 상담사)과도 업무범위가 중복되며, 서비스 대상측면에서 보건복지부 보다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등이 주관 부처가 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임.

- 1급 상담사에 대해서만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국가자격 심사를 우회하는 길을 열어주고 무자격자의 활동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음.

3) 한국상담학회

□ (최종윤·전봉민의원안) 동 제정안들에 대해 지지하며, 민간 심리상담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심리상담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제정안은 학력요건과 실무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심리상담사용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의 품질 담보를 위해서는 학력요건과 실무경험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정숙의원안) 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심리상담사의 직무·훈련·교육체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심리사’라는 다른 이름의 직군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자격기본법과 NCS에 부합되지 않으며,

② 제정안에서 제시한 응시자격은 지나치게 높이 설정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③ 부칙 제2조의 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심리상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심리상담 수요(연간 약 300만명)와 공급인원(약 10만명)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내담자들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음.

□ (심상정의원안): 전반적으로 동의. 다만, ‘상담’이라는 용어는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외에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로 이해될 수 있는바, 국민의 마음건강에 대한 비의료 전문 서비스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상담’이라는 용어보다는 ‘심리상담’이 적절함.

- 또한,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심리상담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상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심리상담사 중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상담심리학회

□ (최종윤의원안) 자격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닌 ‘대학원’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것을 기본 자격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심리상담은 인간에 대한 심리적·생리적·생태학적(환경적)·인지적·관계적 측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로 수행되는 것으로, 학부에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다방면적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석사과정을 통해 심리상담과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과정의 심화, 실습을 통한 실제적 상담과정에서의 전문성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전봉민의원안) 심리상담사의 자격은 시험 뿐만 아니라 수련과정 이 중요하므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자격시험응시 조건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학부 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심리치료 실무에 위한 기본기술 및 전문지식 습득, 연구역량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졸업 또는 실무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정하는 것은 심리상담사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경과조치로 현 민간자격 보유자들을 충분히 수용하여 인력을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면 자칫 자격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전문역량을 훈련할 수

있는 교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을 갖춘 수련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정숙의원안) ① 심리사범 자격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평가의 업무 수행은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 학력이 석사 이상이어야 함은 동의함.

- 다만, 응시자격의 학력 기준을 ‘학사 및 석사’ 또는 ‘석사 및 박사’로 제한하는 경우 심리학 학사가 아닌 경우 박사학위가 필수가 되어 심리사로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므로, 현재 민간에서 인정하는 상담관련 자격기준을 고려하여 관련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수련과정으로 심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심리사의 자격 급수를 두도록 함.

- 수정의견 -

- ① 1급심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및 심리평가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를 취득하고, 3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실무수련을 마친 자
- ② 2급심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및 심리평가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를 취득하고,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② 제6조(심리사의 전문영역)은 제2조(정의)와 제3조(심리사의 업무) 등에 따라 이미 해당 영역에서의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되며, 심리사의 직무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다루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필요성과 근거가 빈약하므로 삭제 필요

③ 부칙(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제정안의 심리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고유영역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과정없이 또 다른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함은 모순이므로 삭제 필요

-수정의견-

부칙 제2조(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심리사 관련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상담심리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심상정의원안)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상담사’의 전문성 수준이 매우 낮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자의 상담문제가 더욱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담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들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

- ‘상담’에 대한 정의를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어려움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전문적 접근을 명시하는 ‘심리상담’으로 수정 필요

- 1급과 2급 상담사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자격으로 구별되는 업무의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며, 단지 수련을 받는 것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자격자의 양산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음.

5) 한국상담진흥협회

□ (서정숙의원안) 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격의 난립과 국민 피해 발생’을 문제시하여 그 해결책으로 ‘심리사’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이미 ‘심리상담’ 직무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고, 수준 높은 ‘심리상담사’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반대함. 제안이유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자격관리체계와 부합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전문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심리상담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합함.

- ‘심리사’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은 특정학과 중심으로 높은 학력과 수련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국가자격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현재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현업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특정 학문분야를 명시하기 보다는 심리상담 관련 과목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현재 의사·교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인간조력분야의 국가자격은 학사 수준의 자격이며, 학사과정 중에 실습·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격요건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과목에 실습과목을 포함시켜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상정의원안): 법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담영역⁴¹⁾은 ‘심리상담’ 분야로서 ‘청소년지도’나 ‘직업상담’과 구분되는 용어의 선정과 정의가 필요함. 또한, 경과조치 규정은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비전문기관이 난립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함.

6) 대한의사협회

□ (최종윤·전봉민·서정숙·심상정의원안) ① 현재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상담학 과목이 개설된 곳이 많고, 그 기관별 교육 수준도 다양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이 부재하고, ②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의학과와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현행 보건의료관계 법령과도 상충되며, ③ 심리(상담)사라는 신규 직종을 창출할 경우 심리(상담)사와 의사간에 업무영역으로 인한 갈등으로 보건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행위인 심리치료를 불법으로 시행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41) NCS에서 상담(중분류)은 ‘직업상담서비스’, ‘청소년지도’, ‘심리상담’ 등 3개 소분류로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서정숙의원안의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명칭과 관련하여 ‘치료’는 의료행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심상정의원안은 1급 상담사와 2급 상담사의 자격 기준을 수련시간·국가시험 응시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나 각 급별 상담사의 명확한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7)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정신건강 영역에서 담당하는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학부의 상담학 혹은 심리학 등 졸업자’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리상담의 핵심 역량을 가늠하기 어려움.

또한,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5천여 개 이상의 상담 및 유사 관련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어, 난립된 심리상담을 법제화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정신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음.

- 또한,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심리검사’ ‘심리평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심리상담사의 자격기준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및 수련 기준을 제안하지 않고 있어 수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음.

- 제정안은 현행의 전문요원의 자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전문가를 양성하여 국가자격증의 업무를 훼손시키는 결함을 갖고 있음.

8)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심리상담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수업을 이수했거나 수련 없이 심리상담 시설에서 특정 기간 이상을 종사하는 것만으로는 상담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없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련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수련 책임자의 지도를 엄격하게 받는 것이 필수적이나, 제정안의 자격기준은 너무 느슨하여 전문성을 가진 심리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전문성 저하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사료됨.

□ (심상정의원안)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담학·심리학과 관련된 과목만을 이수 하는 것 만으로는 전문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학위’ 취득자로 수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1급 상담사 자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질환 수준의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 정신의학과 의료시스템으로 의뢰를 하도록 상담사의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9)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최종윤·전봉민·심상정의원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OECD 국가들에서 규정하는 자격 기준에 준하는 석사학위+ 2,000시간 이상의 수련기간을 거친 정신건강 전문인력들(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이 있고, 이 중 정부기관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사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의 국가 자격증으로 공인되었음.

제정안은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 특히, 종합심리평가는 정신과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도구이며, 군입대면제 및 법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검사로, 3,000시간 이상의 수련과 심리학 석사학위가 필요하며 현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외에는 실시가 어려운 수준임.
- 인증되지 않은 각 분야의 상담사가 ‘심리상담사’로 통합되어 이러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오진단 등으로 군면제 및 법률적인 문제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됨.

10)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전봉민의원안) 국내 심리상담분야 민간 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분석과 구체적 타당성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함.

- 심리상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자격을 소지한 직역군(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존재하므로 심리상담사라는 자격증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인프라 확충 및 인력확대를 위한 과정이 선행될 필요
- 수련 체계 없이 이론적 시험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서정숙의원안) 국내 심리상담분야 민간 서비스 제공 현황(자격취득 및 수련기관 현황, 수련기관 선정기준 등) 실태분석을 통해 심리사 법안을 실질적으로 제정해야하는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함.

- 심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자격을 소지한 직역군(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존재함에 따라 저촉되거나 중첩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인프라 확충 및 인력확대를 위한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심상정의원안) 상담서비스의 증가로 별도로 ‘상담사’, ‘심리사’만으

로 특정 직종에 한정하여 단독법을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기존의 상담업무를 해 오고 있는 여러 직종의 사회적·업무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11)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제정안은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 특히, 종합심리평가는 정신과 질환 진단에 사용되는 도구이며, 군입대면제 및 법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검사로, 3,000시간 이상의 수련과 심리학 석사학위가 필요하며 현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외에는 실시가 어려운 수준임.

- 인증되지 않은 각 분야의 상담사가 ‘심리상담사’로 통합되어 이러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오진단 등으로 군면제 및 법률적인 문제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됨.

□ (서정숙의원안) 심리사의 자격에 심화교육과정과 평가를 통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추가 요구

12)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최종윤의원안) 제정안의 심리상담사의 응시자격은 OECD 국가들

(미국·호주·영국 등)의 자격기준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낮은 기준으로 폐지되거나 전부수정 필요

- 부칙 제2조(청소년상담사 등의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는 현재 상담과 관련하여 발급된 국가 및 민간의 모든 자격증에 대해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자격증을 분류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자격심의회위원회’를 두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정숙의원안) 의견없음

Ⅲ. 주요 내용별 검토⁴²⁾

1. 정의·업무·무자격자의 업무 종사 금지 등(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네 개의 제정안은 심리상담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업무 등을 규정하여 비전문적·비윤리적 심리상담 행위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일반 국민의 심리상담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공유하고 있으나, 제도화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현실에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을 통합할 수 있는 일반 심리상담 국가자격의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서정숙의원안은 심리학적 전문지식과 기법·원리를 기초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학 전공 중심의 ‘심리사’ 자격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심상정의원안은 상담을 통합한 국가자격을 신설하려는 면에서는 최종윤·전봉민의원안과 동일하나, ‘심리검사·심리평가’ 등 심리학 전문영역을 제외하고, 심리상담을 포함한 나머지 상담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을 포괄하여 ‘상담사’로 통칭하여 자격을 신설하려는 것임.

42) 장과 조문 수가 가장 많은 최종윤의원안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하겠음.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심리상담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상담”이란 심리상담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심리적 갈등이나 사회적 부응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상담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상담”이란 심리상담사가 일상 다각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지원	심리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심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사”란 이 법에 따른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심리서비스”란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	상담사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담사의 자격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전략 등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

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전략과 대면·비대면 대화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심리상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내담자(來談者)”란 심리상담사로부터 심리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과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심리상담사”란 제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제1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내담자”란 심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자 심리상담사에게 대면 혹은 비대면 상담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료,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3.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이란 심리사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심리검사”란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성격, 태도, 적응수준, 그 밖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심리학적 측정 도구, 기기, 절차를 사용하여 관찰하고 측정하며 이를 기록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5. “심리평가”란 심리검사와 함께 면담과 행동관찰

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상담사”란 상담교육과 수련을 통해 전문적 자격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상담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내담자”란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을 활용하여 개인의 지능, 인지 기능, 정서, 행동, 성격, 적응수준 및 그 밖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보고서 서식으로 작성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6. “**심리상담/심리치료**”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7. “**심리재활**”이란 심리적 장애의 고통과 불편감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을 돕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8. “**심리교육**”이란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 및 개념을 교육하여 심리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문제 혹은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9. “**심리자문**”이란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자문에 응하여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말한다.

10. “**심리연구 및 개발**”이란 심리건강 문제, 심리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연

제3조(업무) 심리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2.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서비스 제공 3. 심리자문 4. 그 밖에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업무) 심리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2. 마음의 건강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 업무	구와 심리서비스에 활용되는 도구나 방법론을 연구하고 개발함을 말한다. 제3조(심리사의 업무) 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2.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3. 심리교육 4. 심리자문 5. 심리연구 및 개발 6.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7.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	제3조(직무) 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자문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3. 그 밖에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사항)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제4조(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사항) ①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제4조(심리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제29조(상담행위의 제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심리상담사, 심리상담법인 또는 심리상담사협회가 아닌 자는 심리상담사, 심리상담법인 또는 심리상담사협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심리상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심리상담사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심리상담 및 이에 관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u>심리사의 명칭</u>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상담사가 아닌 자는 상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나. 검토의견

(1) 심리상담·상담의 정의, 자격증의 명칭 및 업무영역

□ 최종윤의원안은 ‘심리상담’을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심리상담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전략과 대면·비대면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심리상담사’의 업무영역으로 심리검사·심리평가·심리자문

이외에 개인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등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봉민의원안은 ‘심리상담’을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심리상담사’의 업무영역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외에도 마음 건강과 관련된 지식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서정숙의원안은 ‘심리서비스’를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로 정의하고, 각 구성 영역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리서비스에 속하는 행위 중 하나인 ‘심리상담’에 대하여는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심리치료)⁴³⁾’로 정의하는 한편,

‘심리사’의 업무영역으로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등 심리서비스 구성 항목 외에 심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운영을 포함하고 있음.

43) 심리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심리치료’는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심상정의원안은 심리학·상담학·사회복지학·교육학·미술과 음악 등 다양한 학문과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상담인력을 모두 포괄하려는 것으로,

‘상담’을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종윤의원안의 ‘심리상담’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음.

또한, ‘상담사’의 직무로 개인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자문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윤의원안의 심리상담사 업무 중에서 ‘심리검사·심리평가’를 제외한 것임.

심리상담의 방식과 대상, 이론적 배경과 학문이 다양함에 따라 이들을 모두 포섭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대신 ‘상담’으로 하되, ‘심리검사·심리평가’는 심리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아 ‘상담사’의 업무영역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정의, 자격증 명칭 및 업무영역 비교>

구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의원안
정의	“ 심리상담 ”: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u>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전략</u> 과 대면·비대면 대화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 심리상담 ”: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자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	“ 심리서비스 ”: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u>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u> “ 심리상담심리치료 ”: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	“ 상담 ”: <u>인지적·정서적·행동적 상담전략</u> 등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일상생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자격증명칭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심리사	상담사
업무영역	•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심리자문 • 그 밖에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마음의 건강에 관한 지식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	•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 심리상담·심리치료·심리재활 • 심리교육, 심리자문 • 심리연구 및 개발 • 심리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상담자문,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 • 그 밖에 상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최종윤·전봉민·서정숙의원안의 ‘심리상담’과 심상정의의원안의 ‘상담’에 대한 정의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일상생활의 심리적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네 개의 제정안 모두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의 규정은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해야 하나,

전봉민의원안은 ‘심리상담’을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서정숙의원안은 ‘심리치료’를 심리상담과 동일시하여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을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심리학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치료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 관련 법령체계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심상정의원안은 상담 분야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분야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어 금융상담 또는 부동산상담 등 인간의 심리문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담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될 우려도 있으며, 현재 자격기본법 시행규칙⁴⁴⁾에 민간자격 ‘상담 분야’는 주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소관 부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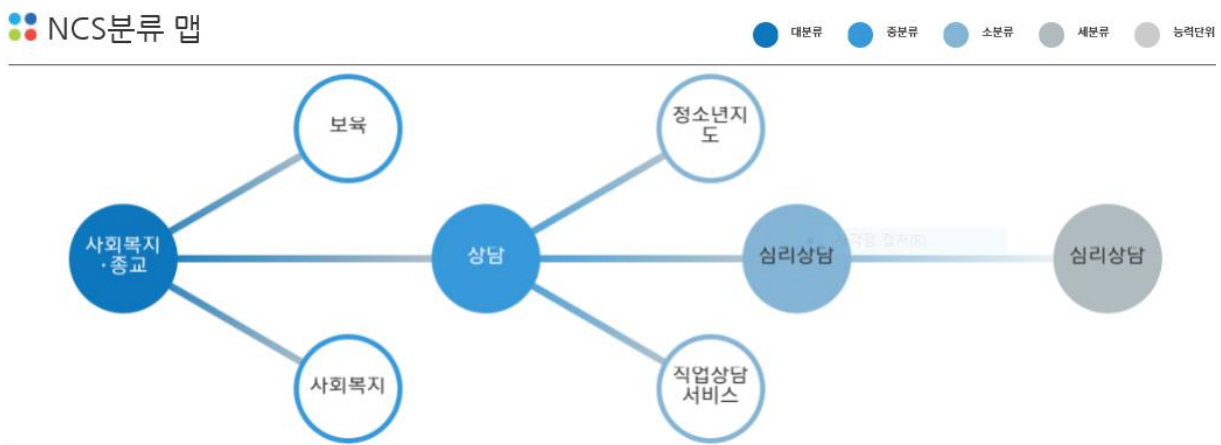
44)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주무부장관(제2조제5항 관련)

교육부장관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 한편, 「자격기본법」 제3조⁴⁵⁾에 따르면,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도록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⁴⁶⁾의 분류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대분류(사회복지·종교)의 중분류인 상담을 청소년지도·심리상담·직업상담서비스로 소분류하고, 심리상담은 심리상담, 청소년지도는 청소년활동·청소년상담복지·진로지원, 직업상담서비스는 직업상담·취업알선·전직지원으로 각각 세분류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중분류(상담) > 소분류(심리상담) > 세분류(심리상담)에 의해 심리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신설이 가능함.



45)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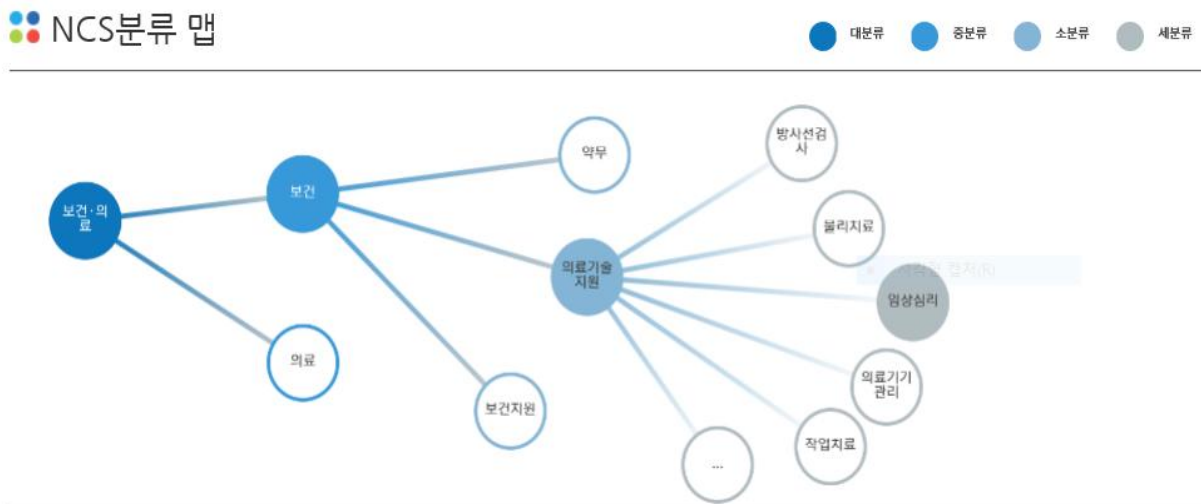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46)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함(「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

또한, ‘심리상담’을 ‘심리사회적 문제 해소 및 성장을 위하여 전 연령의 개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문적 상담관계에 기초하여 심리교육 및 예방, 심리치료 등을 수행하는 일’로 정의하는 한편,

능력 단위⁴⁷⁾에 심리상담안내·접수상담·내담자 의뢰 및 연계·개인심리치료상담·집단상담·관계자 상담·위기상담·심리상담교육·심리검사 활용·심리상담 정보관리·심리상담 자문·상담자 훈련·심리상담 수퍼비전·심리상담 사례개념화 등 21개 요소를 규정하고 있음.

- 다음, 대분류(보건·의료)의 중분류인 보건을 역무·의료기술지원·보건지원으로 소분류하고, 의료기술지원은 다시 방사선검사·물리치료·임상심리·의료기기관리·작업치료 등으로 각각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임상심리’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을

47) NCS 활용의 기본요소로, 갖추어야 할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직업기초 능력으로 구성됨.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자문, 교육, 연구, 재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능력단위에 심리평가·심리치료·심리자문·심리교육·임상심리연구·심리재활·지도감독·임상심리업무지원·심리건강증진 등 9개 요소를 규정하고 있음.

<심리상담·임상심리의 NCS 능력단위 요소 비교>

	심리상담 (대분류: 사회복지·종교) (중분류: 상담)	임상심리 (대분류: 보건·의료) (중분류: 의료기술지원)
능력단위	심리상담안내 접수상담 내담자 의뢰·연계 개인심리치료상담 집단상담 관계자 상담 위기상담 심리상담 교육 심리검사 활용 심리상담 정보관리 심리상담 자문 수련상담자 교육 심리상담 슈퍼비전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재난극복 상담 트라우마 심리치료 부부·가족 상담 비대면 심리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심리상담 기획·행정 심리상담 홍보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자문 심리교육 임상심리연구 심리재활 지도감독 임상심리업무지원 심리건강증진

- 심리상담과 임상심리의 NCS 능력단위 요소를 비교해보면, 임상심리가 의료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분류(보건·의료) 및 중분류(의료기술지

원)로 구분된다는 점과 심리상담의 능력단위가 보다 세분화되어 기술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직무의 능력단위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임⁴⁸⁾.

- 참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⁴⁹⁾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로 ①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계기관(대한의사협회) 의견

- 본 법안들에 명시된 심리(상담)사의 ‘심리상담’과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의 ‘심리치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의료인인 심리(상담)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에 근거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과도 상충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48) ‘심리상담 관련 법률안 사전 입법영향분석(심리상담사 ‘자격기준’의 설정을 위한 입법제언)’, 국회입법조사처, p49

49) **정신건강간호사**의 개별업무로는 ①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활동,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개별업무로는 ①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②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를 규정하고 있음.

(2) 무자격자의 업무 종사 금지 등 ‘업무독점적’ 자격제도 관련

□ 네 개의 제정안은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독점적’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업무독점적 자격제도는 「공인회계사법」·「공인중개사법」·「행정사법」 등 자격증과 관련하여 많은 유사 입법례가 있음.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의 자유를 고려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하며,⁵⁰⁾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독점적 자격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으므로,

해당 자격자에게만 업무를 행하도록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사의 자격요건, 경과조치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에게 심리상담 등의 업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재 의료인이 행하

50) 「법제이론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p.541)

헌법재판소는 자격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1995. 6. 29. 90헌바43)

는 통상적인 심리상담이 불법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고,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등 국가자격의 경우 해당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업무 영역을 제한할 우려도 있어, 국가자격 관련 다른 법률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업무독점적 자격제도 관련 내용>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심리상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사항>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	<심리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사항> 심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함	<상담행위의 제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할 수 없음.	

- 참고로, 심상정의원안은 등록된 상담사가 아니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담행위는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상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네 개의 제정안은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서정숙의원안은 심리사의 동일명칭을, 전봉민·심상정의원안은 심리상담사 또는 상담사의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종윤의원안은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되, 심리상담사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법인 및 심리상담협회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음.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관련>

구 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대상) 심리상담사, 심리상담법인, 심리상담사협회	○ (대상) 심리상담사	△동일명칭 사용금지 (대상) 심리사	○ (대상) 상담사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일명칭 외에 유사 명칭까지 사용을 금지할지, 대상을 자격자 외에 법인·협회에도 확대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명칭 사용 금지를 위한 공익상의 요청,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사회생활에서의 혼동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

법」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관계기관(교육부) 의견

- 현재 심리 또는 상담과 관련한 민간자격이 기발급되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14조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사용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유사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관리자의 신뢰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사와 동일 명칭 사용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심리상담사·심리사·상담사의 자격·응시자격 등(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네 제정안은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의 자격요건으로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검정형’ 자격⁵¹⁾을 도입하고,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심상정의원안은 1급 상담사는 1급 상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수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나, 2급 상담사는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제6조(심리상담사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심리상담사의 자격이 있다.	제5조(심리상담사의 자격) 제7조에 서 정하는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심리상담사가 될 자격을 가진다.	제5조(심리사 자격) ① 심리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1.2. (생략) ② 심리학 관련 학문에 대한 정의, 심리사 교육과정	제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급 상담사의 자격을 갖는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제8조에 따른 수련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

51)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연수 등의 일련의 검정과정을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함. 이에 비해 ‘과정이수형’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함.

		및 심리사 실무수련에 대한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심리사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매년 1회</u>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급 상담사의 자격을 갖는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및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하고, 제8조에 따른 수련을 받은 사람 2. 제2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가석방의 경우도 포함)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심리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러하지 아니하다.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미성년자, 피 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 한정후견인
		4.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미성년자, 피 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심리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심리상담사 자격심의회) ① 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	한 사람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심리사 자격심의회) ① 심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리사 자격심의회를 둔다.	제10조(상담사자격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상담사자격심의회·징계위원
---	--	---	---	--

리상담사 자격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심리상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사 자격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상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심리상담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심리상담사 시험) ① 심리상담사시험은 매년 **1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심리상담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

②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교육인증평가 소위원회
2. 실무수련인증평가 소위원회
3. ~~자격관리심사소위원회~~

③ 심리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리상담사 시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심리상담사시험은 총 2차에 걸쳐 실시하며, 이를 모두 통과한 자에게 심리상담사 자격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담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상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담사 자격의 취득 및 징계와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시험)

① **1급 상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가

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심리상담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 제9조에 따른 심리상담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을 부여한다. 제8조(응시자격)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심리사 자격) ① 심리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관”라 한다)의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	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1.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에 따른 대학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기타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제3조에 따른 심리상담사 업무 혹은 그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	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나,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 제6조(심리사의 전문영역) ① 심리사 중 전문영역을 표기하려는 자는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분야	제8조(수련) ① 1급 또는 2급 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련을 받아야 한다. 1. 1급 수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련시간 및 2급 수련시간을 포함해 5천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2급 수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련 시간을 포함해 2천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과정 및 수련기관, 수련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	--	--

제11조(심리상담사 시험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사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보건복지부장

제9조(심리상담사 시험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심리상담사 시험의 관리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 관리 위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를 표기하지 못한다.

③ 전문영역 표기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영역 표기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관은 제9조에 따른 심리상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제9조에 따른 심리상담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3조(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심리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심리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신청 당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		제11조(상담사 자격증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갖추고 제8조에 따른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증의 발급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증의 발급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

나. 검토의견

(1) 자격·응시자격 관련

□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심리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응시자격으로 학력 또는 실무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심리학 뿐만 아니라 상담학 등 유관 전공 학문까지 포함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며,

서정숙의원안은 심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 시간 '실무수련'을 받은 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심리학을 기초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비교적 엄격한 응시자격을 요구함.

심상정의원안은 1급 상담사와 2급 상담사로 자격을 나누고, ① 1급 상담사의 경우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시간 '수련'을 받은 자에게 상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하되, 응시자격으로 '2급 상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② 2급 상담사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대학원에서 상담학·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졸업하여 2,000시간 수련을 받은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시험 응시 자격을 살펴보면, 최종윤의원안은 ①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상담학·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②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력이 없더라도 5년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만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종윤·전봉민·서정숙의원안 중 가장 폭넓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전봉민의원안은 ① 대학원에서 상담학·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 ② 대학에서 상담학·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

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심리상담사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인정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3년 이상 심리상담 관련 실무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별도의 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음.

서정숙의원안은 ①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 ②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 또는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요건과 비교해 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에서 승급하거나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를 제외하고, 수련 기한을 축소한 것임.

<심리사법안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자격기준 비교>

구 분	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 기준	①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②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하고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 ③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자	①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②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수련 기준	운영 및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3년 3,000시간 이수

심상정의원안은 ‘2급 상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 1급 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5,000시간(2급 수련시간 2,000시간 포함) 이상 수련을 받은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응시자격 요건 내용 비교>

구 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심리상담사>		<심리사>	<상담사>
응시 자격 요건	• 대 학 원 · 대 학 등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업무 종사 경력	• 대학원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 • 대학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 + 3년 이상 업무종사 경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심리사 교육과정 인정을 받은 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 후 +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 실무수련 마친 사람 •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후 +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 실무수련 마친 사람 •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외국의 심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1급상담사> • ‘2급 상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격 요건	심리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	심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1급상담사> ♦ 국가시험에 합격하여+5,000시간(2급 수련시간 2,000시간 포함) 이상 수련을 받은 자 <2급상담사> ♦ ‘대학·대학원에서 상담학·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졸업하여+ 2,000시간 수련을 받은 자
특징	♦ 학위 취득 없음 ♦ 응시요건으로 실무수련 없음	♦ 학위취득(석사, 박사) + 실무수련(응시자격요건)	♦ 학위취득 없음 ♦ 수련(응시자격 요건(×), 시험합격 후 자격요건 또는 자격취득 요건)

□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국민의 심리상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이에 심리상담 서비스에 기대하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 인력의 전문성 요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서비스 제공 현황, 대학 등에서의 심리학·상담학 등의 교육 현실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지역 단체·관련 학회·다양한 이

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 기관 및 학회 의견

가. 교육부

-(최종윤의원안) 「학점인정법」 및 「독학학위법」에 따라 심리학 등 관련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상담학,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력을 인정한 사람’을 포함할 필요

나. 경기도

-(최종윤의원안) 심리상담은 이론적 지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자격취득 및 이를 위한 시험에 앞서 임상수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기존 전문인력 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나, 심리상담사 자격을 추가·신설한다면 수련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해당 조항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심리학회

-(서정숙의원안): 찬성, 다만,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의 경우 별도의 석사학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므로 통합과정의 최종 학위인 박사학위도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할 필요

-(최종윤·전봉민의원안); 반대, 기존 법령에서 ‘심리’ 관련 업무는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2급과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2급이 담당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비롯한 제반 심리업무이며, 제정안들은 기존의 국가자격증의 업무를 훼손하는 결함을 가짐.

라. 한국임상심리학회

-(서정숙의원안): 찬성, 다만, 최근 석박사통합과정이 확산되고 석박사 통합과정에 석사학위 취득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후’를 ‘박사학위 취득 후’로 수정 필요

-(최종윤·전봉민의원안): 반대, OECD 국가 자격기준에 턱없이 못미치는 낮은 기준으로, 충분히 수련받지 못한 상담 인력을 양산하고 국가자격증을 부여하여 오히려 국민정신건강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큼.

특히, 최종윤의원안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에 대한 최소요건을 두지 않아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심리상담을 허용하는 규정임.

-(심상정의원안):반대, 국가자격시험이 없는 2급 자격증 취득 허용으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상담소 및 상담활동을 허용하여 무자격자의 활동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며, ‘상담사’에 대한 교육 및 수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특히 2급 취득 이후 1급 취득 과정에서 ‘수련’이 아닌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법안 내에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준과 상충하는 기준(수련시간 내 실무경력)이 존재⁵²⁾하는 모순이 있음.

마. 한국상담학회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찬성, 다만, 최종윤의원안의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삭제 또는 수정 필요

-(서정숙의원안): 반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심리상담사의 직무·훈련·교육체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심리사’라는 다른 이름의 직군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자격기본법과 NCS에 부합되지 아니함.

또한, 제시한 응시자격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52) 1급 수련 요건으로 ‘대학 등의 수련시간과 2급 수련시간을 포함한 5천 시간’으로 규정(제8조)하면서,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상담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

-(심상정의원안): 찬성, 다만, 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담사의 전문성을 위한 실무수련 기간(5천 시간 이상, 2천 시간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한국상담심리학회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심리상담 관련 상담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원(석사)’ 졸업을 기본자격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수련과정 이수한 자를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서정숙의원안) 응시자격을 ‘학사 및 석사’ 또는 ‘석사 및 박사’로 제한하는 경우 심리학 박사학위가 필수가 되어 심리사로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수련과정으로 심리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심리사의 자격 급수를 두도록 함.

- * ① 1급심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및 심리평가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를 취득하고, 3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실무수련을 마친 자
- ② 2급심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및 심리평가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를 취득하고,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심상정의원안) 상담사 1급과 2급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자격으로 구별되는 업무의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함. 적절한 전문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이 단지 수련을 받는 것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면 무자격자의 양산을 더욱 부추

길 수 있으므로, 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수련 시간, 수련 기관, 교육과정 이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필요

사. 한국상담진흥협회

-(최종윤·전봉민의원안): 찬성

-(서정숙의원안): 특정학과 중심으로 높은 학력과 수련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국가자격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현재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현업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응시자격 요건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에 실습과목을 포함시켜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상정의원안): 상담사 자격을 1,2급으로 구분하는 내용제시가 필요하고, 각 급별 직무와 역할이 구분된다는 점이 언급될 필요가 있으며, 자격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련시간(5천 시간 이상, 2천 시간 이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함함.

아.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최종윤·전봉민의원안) ‘학부’의 상담학 혹은 심리학 등 졸업자는 전문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리상담의 핵심역량을 가늠하기 어려움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5천여 개 이상의 상담 및 유사 관련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자격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어, 난립된 심리상담을 법제화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정신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음.

(2) 결격사유 관련

- 한편, 제정안들은 모두 결격사유를 두어 무자격자를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 자격 취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자격 취득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등록취소 사유로, 서정숙의원안은 등록거부 사유로, 심상정의원안은 등록취소 및 등록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 사유 내용 비교>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좌 동>	-	④ <최종윤의원안과 동일>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좌 동>	-	⑤ <최종윤의원안과 동일>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좌 동>	-	⑥ <최종윤의원안과 동일>

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④ <좌 동>	-	③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 인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 류의 중독자	⑤ <좌 동>	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의약품 중독 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의약품 중독 자
⑦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심리상 담사로서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② <좌 동>	① <좌 동>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정신질환자를 특정 직업군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과 비교형량이 필요해 보임⁵³⁾.

- 한편, 서정숙의원안은 최종윤·전봉민·심상정의원안과 달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아동·청소년

53) 국가인권위원회(2018)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심리상담 중에 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민간자격증을 규율하고 있는 「자격기본법」의 경우에도 성범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 취득 배제를 할 수 없는바, 범죄의 중요성·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그 밖에 자격 관련 결격사유는 무자격자 또는 부적격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의 취지, 자격의 특수성 및 유사 자격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자격기본법」 결격사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⁵⁴⁾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 ⁵⁵⁾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사회복지사업법」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55)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22조

3. 등록 등(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 업무를 개시하려면 등록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등 일정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제14조(등록) ① 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심리상담사의 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 ① 심리상담사시험에 합격하여 심리상담사 자격을 받은 자가 제3조에서 정한 심리상담사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심리상담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5조에 따라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비치하는 심리사등록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등록) ① 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3조에서 정한 상담사 직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때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해당 심리상담사가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4. 해당 심리상담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5. 사망하였을 때	제12조(등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사 자격 등록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에 근거하였을 경우 2. 제6조에서 정한 심리상담사 자격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해당 심리상담사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해당 심리상담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해당 심리상담사가 사망한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제18조에 따른 한국심리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관리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심리사로써 그 자격정지	제13조(등록거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제16조(등록료) 심리상담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제1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심리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심리상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한국심리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16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심리상담사는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대여하거나 심리상담사 자격을 양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제3조에서 정하는 심리상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타인의 심리상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한국심리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상담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사망한 때 제2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
--	---	--	--

사람의 심리상담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폐업신고) ① 심리상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심리상담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휴업신고) ① 심리상담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	상담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심리상담사 업무 수행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폐업신고) ① 심리상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심리상담사협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폐업한 심리상담사가 다시 개업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휴업신고) ① 심리상담사가 일시 휴업을 하려면 심리상담사	하여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	---

라 등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휴업한 심리상담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심리상담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소 설치 등) ① 심리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심리상담사가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보건복지

협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심리상담사가 2년을 경과하여 다시 개업하지 아니할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소 설치 등) ① 심리상담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심리상담사 업무 공간 부족 등 심리상담사 협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장

제15조(상담소의 개설)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상담사가 **상담소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심리상담사가 주재(駐在)하게 할 수 있다. ② 심리상담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리상담사협회에 통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개설등록을 한 상담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합동사무소) ①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심리상담사(이하 “개업심리상담사”라 한다)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합동사무소) ①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 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제고를 목적으로 개업심리상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상담소의 개설·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상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행위를 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된 경우
--	--	--	---

나. 검토의견

□ 제정안들은 공통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갖추더라도 현실적으로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등록취소’를, 서정숙의원안은 ‘등록거부’를, 심상정의원안은 ‘등록취소’와 ‘등록거부’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등록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에 행하는 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신청 당시에 등록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세무사법」·「관세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 등 자격증 관련 다수 법률에서 ‘등록취소’와 ‘등록거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참고2 자격증 관련 등록취소, 등록거부 등에 관한 입법례>

- 다만, 서정숙의원안의 경우 심리사 응시자격 요건으로 일정시간⁵⁶⁾ ‘실무수련’ 마친 자를 요구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 등록 이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도록 하고, 실무수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갱신)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수련 요건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되나, 응시자격 요건과 등록요건을 모두 ‘실무수련’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용어를 달리 규정하거나 등록요건의 실무수련 기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심상정의원안은 상담사의 업무개시 전 ‘등록’ 의무 외에, 상담소 개설시에도 ‘등록’을 하도록 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소 개설등록을 하거나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상담소의 개설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심리상담소 개설시 아무런 규제가 없어 민간자격 취득자나 자격 미취득자에 의해 쉽게 개설이 가능하고, 상담소에서 성폭행 등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상담소에 대한 법적 규율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56)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

<등록취소·등록거부 내용 비교>

구 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등 록 취 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때 ②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③ 등록취소 신청하였을 때 ④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⑤ 사망하였을 때	<좌 동>	-	<상담사> ①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② 등록취소 신청있을 때 ③ 사망하였을 때 <상담소 개설>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업무정지명령에 위반 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③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상담 해위를 하게 한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에 위반한 경우
등 록 거 부	-	-	①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② 등록요건으로 실무수 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자격이 정지된 상담사로서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상담사> ① 제8조에 따른 수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 다음, 자격증 명의대여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타인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징계 또는 자격취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정숙의원안은 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만 행정처분(자격정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은 규정하지 아니하며,

심상정의원안은 상담사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자격증 대여행위 제재 관련 제정안 내용 비교>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안 제17조제2항)	심상정의원안 (안 제 22조)
금지 행위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양수·대여 및 알선 금지		명시 규정 없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등록증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형 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명의 대여·양도 등을 한 자, 상대방, 알선한 자		없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성명·상호를 사용하게하거나 등록증 빌려준자, 상대방
행정 처분	징계57)(안 제42조제1항) (대상) 명의 양도·양수·대여·알선한 자	자격취소(안 제31조제1항) (대상) 명의 대여·양도 등을 한 자	6개월 이내 자격정지(안 제17조) (대상) 명의 대여한 자	

- 다만, 현행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자에 대하여 형사처벌⁵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격을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어,
- 서정숙·심상정의원안 같이 ‘알선한 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알선행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57) 징계 종류: 영구제명,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58)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제32조)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수 있음.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규정 >

구 분	내 용
형사처벌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0조)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미규정

- 한편,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에 대해 처벌 수준을 최종윤·전봉민의원안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지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의 공익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청소년 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 상담사 또는 국가기술 취득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한편,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심리상담사가 폐업하거나 일정기간 휴업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무소만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심리상담소가 별도의 제한이 없이 운영됨에 따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상담소를 개소하고 운영할 수 있어, 일정한 자격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과 더불어 피해 사례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4. 심리상담법인 또는 심리서비스 법인 설립(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심상정의원안을 제외한 최종윤·전봉민·서정숙의원안은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사로 하여금 ‘심리상담법인’ 또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제22조(심리상담법인)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5조(심리상담법인) ① 심리상담사는 그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심리상담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리서비스 법인 의 설립 등) ① 심리사는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심리사가 심리서비스 법인을 개설 또는 해산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사가 심리서비스업을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등) ①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은 3명 이상의 개업심리상담사로 구성한다.		

② 제42조에 따라 직무 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심리상담법인은 사원이 아닌 심리상담사(이하 “소속심리상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제24조(심리상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 심리상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심리상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리상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심리상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5조(심리상담법인의
해산) ① 심리상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
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심리상담법인이 해
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
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심리상담법인의
인가 취소 등) 보건복지
부장관은 심리상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
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제27조(심리상담법인의 사무소) ① 심리상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심리상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심리상담법인의 사원과 소속심리상담사는 그 심리상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심리상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심리상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28조(경업의 금지) ①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심리상담사는 다른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심리상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심리상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심리상담사이었던 사람은 그 심리상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심리상담법인의 심리상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심리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심리상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준용규정) ① 심리상담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리상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세 제정안은 다양한 심리상담 또는 심리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사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최종윤의원안은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설립절차·해산·인가취소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로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자격증 관련 법률이 있음.

5. 심리상담사·심리사·상담사의 권리·의무(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로부터의 신뢰와 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제30조(사무직원) ① 심리상담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심리상담사의 행위로 본다.	제19조(사무직원) ① 심리상담사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소속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내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심리상담사의 행위로 본다.	제16조(사무직원) ① 심리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심리사는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5조(수련심리사) ① 수련 심리사는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 과목과 실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심리사의 책임 감독 하에 심리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련심리사는 보건복지부에 수련심리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심리사는 수련심리사의 직무, 교육, 수련에 대하여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었다. ③ 수련심리사는 제7조에 따른 심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련기간 동안 심리사의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련심리사의 선발, 수련기간, 수련내용, 수련평가 및 탈락, 근로기준, 수련심리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심리사의 기준 등 제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수) ①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을 의뢰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20조(보수) ① 심리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의 대가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② 심리상담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② 심리상담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어떠한 명목으로도 심리상담을 의뢰한 자로부터 금전 또 는 재산상의 이익 이나 그 밖의 반대 급부를 받지 못한다.	에서 정한 보수 약 정을 제외하고는 내담자로부터 어떠 한 명목으로도 유 ·무형의 대가를 받아 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비밀유지의 무) 심리상담사 또 는 심리상담사이었 던 사람(심리상담 사의 사무직원 또 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비밀유지의 무) 심리상담사 또 는 심리상담사이었 던 사람은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심리사, 심리 사이었던 사람 또 는 사무직원, 사무 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규정 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비밀보장의 무) 상담 직무를 수 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 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인권존중 및 품위유지 의무 등) ① 심리상담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상담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의 인 권을 존중하고 성 실하게 상담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리상담사는 국민의 마음 건강 을 둘러싼 환경의	제22조(업무의 연계) 심리상담사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서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 분야와 종 합적이고 적절한 연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심리사 는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되며, 법령 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상담 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화에 따른 업무 내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상담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 심리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상담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 ①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 시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상담기록부에 작성되어야 할 사항, 보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안조치 의무) 심리사는 심리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심리검사 및 관련 사항이 대중이나 공공에 노출되어 오용 및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나 교육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상담기록부 등) ① 상담사는 상담기록부 및 그 밖의 상담에 관한 기록(이하 “상담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상담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나 상담기관(제15조에 따른 상담소 등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상담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상담사는 상담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
---	--	---	--

			게 추가 기재·수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내담자는 상담사, 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상담기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사, 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사, 상담기관의 장 및 상담기관 종사자는 내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담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심리상담사의 교육) ① 심리상담	제24조(심리상담사의 교육·연수) ① 심	제14조(보수교육)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제23조(보수교육) ① 상담사는 상담사의

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심리상담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심리상담사는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 업무를 제36조에 따른 심리상담사협회, 심리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심리상담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심리상담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심리상담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시기·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센터, 기업, 학교 등에서 제3조에 따른 심리사 업무에 종사하는 심리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제24조에 따른 한국상담사협회, 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

나. 검토의견

-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심리상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심리상담을 의뢰한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금전적 피해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며, 유사 입법례로 「행정사법」·「관세사법」 등이 있음.

또한, 네 개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비밀누설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상담기록부 작성·보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방안으로,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후 업무개시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업무 개시 후에는 ‘연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정숙의원안은 응시자격요건과 자격 취득 후 등록 이전에 각각 ‘실무수련’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업무 개시 후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심상정의원안은 상담사 자격요건으로 ‘수련’을 받도록 하고, 업무 개시 후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교육 관련 내용 비교>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업무 개시 전	• 실무교육 (안 제35조제1항) →(위반) 규정 없음	• 등록 전 실무교육 (안 제24조제1항) →(위반) 규정 없음	• 응시 자격 요건으로 실무수련 • 등록 전 실무수련 (안 제9조제1항)→ (위반)등록(갱신) 거부	*상담사자격요건으로 수련의무(안 제8조) →(위반) 등록거부
업무 개시 후	• 연수교육 (안 제35조제2항)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수교육 (안 제24조제2항)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보수교육 (안 제14조제1항) →(위반) 규정 없음	• 보수교육 (안 제23제1항)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만, 최종윤·전봉민의원안은 업무개시전 실무교육 의무 위반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공인회계사법」 59), 「공인노무사법」 6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61) 등 자격 관련 다수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등록거부·등록취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59) 「공인회계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60)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6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또한, 서정숙의원안은 심리사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최종윤·전봉민의원과 같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협회·징계 등(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심리(상담)사 협회의 설립, 직업윤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음.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제36조(심리상담사협회의 설립 등) ① 심리상담사의 품위 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심리상담사협회의 설립 등) ① 국민의 마음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심리상담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심리상담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한 사항은	제18조(한국심리사협회) 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심리사의 전문성 및 품위 유지, 심리사 직무 개선 및 향상 도모, 심리사의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심리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제24조(한국상담사협회) ① 상담사는 상담에 관한 연구, 상담사의 윤리 확립 및 상담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담사협회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상담사협

④ 협회는 심리학 과, 상담학과, 교육 학과 등 관련 전공 전문가들의 다양하 고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회 임원을 구성하 여야 한다. ⑤ 협회는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지회 또는 지부 를 둘 수 있다. ⑥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는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얻 을 경우에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과 설립 절차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협회 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는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얻 을 경우에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과 설립 절차 등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 니한 사항은 「민 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상담사협 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7조(협회의 정관)	제26조(협회의 정관)	제19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는 정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정관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①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 무소의 소재지 2.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	①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 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 무소의 소재지 2.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한 사항	4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협회의 가입의무) 제11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심리상담사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가입의무) 제9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심리사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8조(윤리규정)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직업윤리규정) ① 협회는 그 회원인 심리상담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심리상담사 직업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윤리규정) ① 협회는 그 회원인 심리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심리사 직업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5조(윤리규정) 한국상담사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상담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9조(협회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한다.	② 회원은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제정한 직업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제정한 직업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감독) 한국상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40조(정보 공개) 협회는 내담자의 심리상담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인 심리상담사의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정보공개) ① 협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된 심리상담사의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내담자 선임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서비스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상담서비
	② 심리상담사는 사		

	실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제공될 자료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상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 ① 심리상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제30조(자격정지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	제17조(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8조(징계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이하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징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1.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내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담자로부터 보수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31조(심리상담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심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격을 타인에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상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상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4. 견책
---	---	--	--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영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33조제1항에 따른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34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사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 9. 심리상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리상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심리상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 이후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양도하였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위조·변조한 경우 4. 제3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기간 중에 심리상담사 자격이 수반되어야 수행 가능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자격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리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
--	---	--

처분을 한다. ③ 심리상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제명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4. 견책(譴責)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고와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심리상담 사무소 또는 심리상담법인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 발생한 경우	
---	--	-----------------	--

업무상황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사의 등록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심리상담법인 설립 인가의 취소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심리	제23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	--

상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심리상담사, 심리상담법인 또는 심리상담사협회가 아닌 자는 심리상담사, 심리상담법인 또는 심리상담사협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	--

나. 검토의견

□ 각 제정안은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의 품위유지 및 업무 개선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⁶²⁾

- 다만, 전봉민·서정숙의원안은 등록한 심리(상담)사에게 협회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바, 변호사·세무사와 같이 그 직무 자체에 공적 성격이 강한 경우 해당 입법례가 있으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입강제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62) 최종윤의원안은 직업윤리 규정을 협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고, 전봉민·서정숙·심상정의의원안은 협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정안들은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격 취소, 자격정지 또는 징계 등의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최종윤·심상정의원안은 징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봉민 의원안은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정숙의원안은 자격정지·자격취소 및 징계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자격기본법」 제32조⁶³⁾는 자격 일반에 대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심상정의원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이 없는 한국상담사협회의 장에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치를 분리시켜 규정할 필요가 있음.

63) 제32조(자격취득의 취소·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자격취소·징계 등 제재처분 비교>

구분	최종윤의원 안	전봉민의원 안	서정숙의원 안	심상정의의원 안
자격 정지	규정 없음	① <u>2개 이상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u> ② 휴업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내담자로부터 보수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①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규정 없음
자격 취소	규정 없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격취득한 경우 ② 자격취득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u>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양도·위조·변조한 경우</u> ④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내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⑤ <u>자격정지기간 중에 심리상담사 자격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u>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반드시 취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한 경우 ③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심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 ④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규정 없음
징계	<사유> ① <u>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내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u> ② <u>명령에 따른 휴업의무를 위반한 경우</u> ③ <u>2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u> ④ 직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⑤ 경업금지 위반 ⑥ 비밀유지의무 위반 ⑦ 인권존중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⑧ <u>직무정지처분</u>	규정 없음	<사유> 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내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② 품위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 위반시	<사유> ① 이 법을 위반한 때 ②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받은 심리상담사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 ⑨ 타인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양수·대여한 경우 <징계 종류> ① 영구제명 ② 등록취소 ③ 3년 이하의 직 무정지 ④ 견책 <절차>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징계처분		<징계 종류> ① 자격정지 ② 제명 <절차> 회칙에 따라 협회가 징계	<징계 종류> ① 등록취소 ② 2년이하 직무정지 ③ 1년 이하 일부직무정지 ④ 견책 <절차> 자격심의·징계위원 회 의결에 따라 복지 부장관이 징계처분
---	--	---	--

- 서정숙의원안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17조제2항),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리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② 심리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하고 있는바,
- 하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권한자가 복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협회에 징계권한을 부여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심사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미흡한 면이 있음.

7. 벌칙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각 제정안은 법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 제17조제3항(제2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알선한 자 4. 제32조(제29조제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한 심리상담사, 대여·양수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심리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한 자 3.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목적으로 심리사를 표방하며 심리서비스를 한 자. 다만, 수련심리사로서 수련기간 동안 심리사의 지도하에 심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4. 제28조를 위반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 기간에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3. 제46조를 위반하여 심리상담사, 심리상담법인 또는 심리상담협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사, 상담사무소, 심리상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담자로부터 보수 외에 유·무형의 대가를 얻은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2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심리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분야를 표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여 상담행위를 한 자 ② 제17조를 위반하여 상담사가 아닌 자로서 상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2. 제31조제2항(제2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심리상담을 의뢰한 자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제48조(양벌규정)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상담법인의 사원인 심리상담사, 소속심리상담사 또는 사무직원이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상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상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상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33조(양벌규정) 심리상담사의 사무직원이 심리상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이외에 해당 심리상담사에게도 해당 조문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심리상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위·감독 의무를 기울였음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2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상담기록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34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개업, 이전,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 부과·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상담기록부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상담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삭제·수정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기록부등 내용의 확인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	--

다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	--	--	--

나. 검토의견

□ 제정안들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성질·태양과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들의 벌칙 비교>

구 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의원안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①심리상담사아닌 자가 심리상담 업무를 업으로 한 자 • ②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및 양수 대여받은 자 • ③명의대여 등을 알선한 자 • ④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①심리상담사아닌 자가 심리상담 업무를 업으로 한 자 • ②③자격증·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및 양수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		• ④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②자격증 등을 양도·대여한 자 및 양수 대여받은 자 • ⑥징계처분에 위반하여 상담사 업무를 한 자

구 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2년이하 장역 or 2천만원 이하 별금	• ⑤등록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 ⑥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 기간에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 ⑦심리상담사·심리상담법인·심리상담사협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년이하 장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별금	• ⑧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한 자 • ⑨심리상담을 의뢰한 자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반대급부를 받은 자	• ⑦심리상담사·심리상담법인·심리상담사협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⑤등록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 ⑥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직무정지기간에 심리상담사 업무를 한 자 • ④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⑦심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 • 심리사가 아닌 자로서 심리서비스 법인을 설립한 자 • ①심리사 아닌 자로서 심리사를 표방하여 심리서비스를 한 자(수련심리사 제외) • ④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⑦상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00만원 이하 별금		• ⑧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한 자 • ⑨심리상담을 의뢰한 자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반대급부를 받은 자	• 전문심리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분야를 표시한 자	

구 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⑩상담기록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⑪연수교육받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⑫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	• ⑩상담기록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⑬심리서비스법인 개설·해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 심리서비스업 개업·폐업·휴업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 ⑬폐업·휴업 신고, 사무소 설치·이전·폐지한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⑪연수교육받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⑬사무소 개업·이전,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⑩상담기록부를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기록부등 내용의 확인 요청을 거부한 자 • ⑪보수교육 받지 아니한 자

8. 부칙(특례·경과조치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들은 모두 업무독점적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심리상담사·심리사 또는 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기존 자격자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례 또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 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 등의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제3조(심리상담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은 기점으로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1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시에는 이 법률에 따른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학, 아동학, 상	제2조(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에 한 정하여 심리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심리사 관련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취득하고 심리학 관련 학문 분야	제2조(상담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담을 하고 있는 자는 제5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상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자격증 취

청소년상담사 자격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u>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u>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심리 혹은 상담 관련 자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의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단체가 발급한 심리 또는 상담 관련 자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	상담,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각 학위별로 <u>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기간을 충족한 자</u>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학, 아동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전공을 5년 이상 교수한 자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기간을 충족한 자</u> 3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대통령령	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실무수련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심의회가 인정한 자 ② 부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존 자격의 인정 기준, 학문 분야 등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상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상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	--

구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심리상담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 제5조(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심리상담 사무소 또는 심리상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20조 또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신고 또는 심리상담법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심리상담 사무소 또는 심리상담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	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제3조에 정하는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심리상담 분야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실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석·박사 학위의 인정기준, 5년 이상 교수한 경력, 수련기간의 기준 등 심리상담사 자격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의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당시 심리상담사 내지 심리 혹은 상담의 문자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률 시행 후 2년간은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나. 검토의견

□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특례 또는 경과 조치를 두어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소지자의 기존 자격의 효력을 유지하여 개인의 신뢰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음.

- 최종윤·전봉민·심상정의원안은 세부적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직역의 종사자들을 포함하려는 것이며, 서정숙의원안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구체적으로 최종윤의원안은 ‘청소년상담사’·‘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국가자격 소지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 소지자로 심리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수련기간 또는 실무기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전봉민의원안은 ‘청소년상담사’·‘정신건강전문요원’ 외에 ‘사회복지사’에게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심리상담 전공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수련요건을 충족한 자와 심리상담 전공 5년 이상 교수한 조교수 이상 중 수련요건을 충족한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심리상담 분야 종사자로서 실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서정숙의원안은 국가전문자격 중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

격자만 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타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심리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과 심리사 응시자격 요건의 실무수련(3,000시간)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에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심상정의원안은 상담업 종사자에게 2년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하되, 일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지부장관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및 수련 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존 자격증소지자의 인정 대상 범위 >

구 분	최종윤의원안	전봉민의원안	서정숙의원안	심상정의원안
특례 또는 경과조치	<특례> ①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 또는 상담 관련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② 민간자격증 소지자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심리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자	<특례> ①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학, 아동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 석·박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일정수련기간을 충족한 자 ② 대학(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심리학, 교육학, 청소년학, 아동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등 심리상담 전공을 5년 이상 교수한 자로서+ 일정 수련기간을 충족한 자 ③ 청소년상담사,	<경과조치> 5년에 한해 인정 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취득 자 ② 심리사 관련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심리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제5조제1항제1호의 실무수련 기준에 부합하여 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경과조치> 2년 유예 ① 현재 상담하고 있는 자는 2년간 상담 가능 ② 현재 상담소를 개설·운영 중인 자는 2년간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상담소 운영 가능

		사회 복지 사, 정 신 건강 전 문 요 원 으 로 서 심 리 상 담 업 무 를 수 행 하 는 자 ④ 심 리 상 담 분 야 종 사 자 로 + 실 무 기 간 요 건 을 충 족 한 자		
--	--	---	--	--

- 특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심리상담사·심리사·상담사의 자격요건과 병행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국가자격의 전문성 정도, 현장의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상담사·임상심리사 등 국가자격과 민간에서 인정하는 상담관련 자격 인정기준, 상담관련 전문인력 종사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심상정의원안은 모든 상담업 종사자와 상담소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허용을 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의 난립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관련 학회 의견

가. 한국임상심리학회

- (전봉민의원안) 부칙 제3조(심리상담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특례)에서 명확한 자격기준이 없이 현재 무분별하게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민간자격증 소지자에게 국가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대국민 정신건강증진이라

는 법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심상정의원안) 현행 민간자격자 전원 또는 무자격자에게 심사나 자격 전환 절차 없이 상담업 및 상담활동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되며, 이는 무자격, 비윤리적 상담을 억제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상충되므로 적절한 역량을 갖춘 상담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나. 한국상담학회

-(서정숙의원안) 부칙 제2조의 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심리상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심리상담 수요(연간 약 300만명)와 공급인원(약 10만명)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내담자들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음.

-(심상정의원안)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에 기존의 심리상담사들을 심의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이 없으므로, 법안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심리상담사 중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인정될 만한 전문인력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봉민의원안) 경과조치로 현 민간자격 보유자들을 충분히 수용하여 인력을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하면 자칫 자격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전문역량을 훈련할 수 있는 교과목 이수 여부 및 자격을 갖춘 수련내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정숙의원안) 부칙(심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제정안의 심리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고유영역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과정없이 또 다른 국가전문자격으로 인정함은 모순이므로 삭제 필요

-(심상정의원안) 부칙 제2조(상담사 자격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는 상담의 전문성과 적절성을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자격 요건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라. 한국상담진흥협회

-(심상정의원안) 지금의 민간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비전문기관이 난립함으로써 상담을 받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이 필요함.

<참고1 심리상담 관련 국내 법령 현황>

① ‘심리상담’ 명시 법령 현황

소관	법령	조항
국무조정실(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국가보훈처(8)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
인사혁신처(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
교육부(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용노동부(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국방부(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보건복지부(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법무부(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통일부(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여성가족부(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② ‘심리치료’ 명시 법령 현황

소관	법률명	조항
교육부(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무부(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문화체육관광부(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복지부(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경찰청(1)	경찰공무원 보건의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국방부(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
환경부(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국토교통부(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③ ‘상담치료’ 명시 법령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참고2 자격증 관련 등록취소, 등록거부 등에 관한 입법례>

「공인회계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⁶⁴⁾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9조(등록취소)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제4조 각호의 1⁶⁵⁾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4. 사망한 때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변리사법」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2. 삭제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 의 처
02)6788-5501

64) 제7조(등록)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65) 결격사유에 해당함